

사업장·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가이드라인

사업장

▶ 참여방안(예시)

- ① 운영시간 단축 (번경)
-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(예) 약품 추가 주입 등
- ③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
- ④ 비산먼지 발생 저감
- ⑤ 원료 선별 강화
- *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%이상 감축 조정

▶ 대상

- ①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
- ② 제1차 금속제조업의 소결로, 배소로 등
- ③ 석유정제품 제조업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의 가열시설
- ④ 시멘트제조업의 소성시설
- ⑤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

※ 미 이행시 과태료 200만원

공사장

▶ 참여방안(예시)

-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
 - 작업 중 아적물질 방진덮개 설치
 -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
 - 공사장 내 통행차량 속도 감소
 - 공사시간 단축·조정 (예) 출·퇴근시간 실내작업)
 - 살수량 증대
 -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
 -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
 -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체
- * 공사시간 단축·조정은 터파기,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 (건축물 축조, 해체공사, 토목공사,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)

② 건설기계

-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
-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
-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

▶ 대상

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중 건설공사장

※ 미 이행시 과태료 1차 100만원, 2·3차 위반 200만원



자동차·노후건설장비 운행제한 가이드라인



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(쌍미)

대 상 |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

1. 종합검사 불합격차량
2. 2.5톤이상으로, 市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
3. 수도권 외(가평, 연천, 양평 포함)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

제외차량 |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

대상지역 | 수도권 대기관리구역(서울시, 경기도 28개시, 인천시)

시행일 | 2018년 하반기(경기도 17개시, 서울, 인천),

- 수원, 고양, 성남, 부천, 안산, 남양주, 안양, 의정부, 시흥, 김포, 광명, 군포, 하남, 양주, 구리, 의왕, 과천시
- 2020. 1. (경기도 11개시)

- 용인, 화성, 평택, 파주, 광주, 이천, 오산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

벌 칙 | 1회 경고,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(월 1회 한정)



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(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)

대 상 | 5등급 차량

1. 2005.12.31.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노후경유차
2. 1987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휘발유·LPG자동차

시행시기 | 미세먼지가 심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~21시 (주말 미시행)

제외차량 |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

대상지역 | 전국 시행 (차량 등급제, 차량 5부제, 차량 2부제 등 선택 가능)

시행일 | 2019. 2. 15. 이후 - 차량 등급제 단속시스템 구축 후 단속

벌 칙 | 10만원 과태료 (적발시)



노후건설장비 사용 제한 (예정)

배 경 |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 1위는 건설기계 발생 초미세먼지 ('15년 기준, 국립환경과학원)

대 상 | 서울·경기·인천 내 총 공사비 100억이상 관급공사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

-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장비(지게차, 굴삭기) 및 2005년 이전 등록된 도로형 3종 건설장비(덤프, 콘크리트 믹서, 콘크리트 펌프)의 사용 제한

시행시기 | 관련규정 개정 중